

담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담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6. 10.

담양군의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속적인 경로당 수요 증가로 인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건전하고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집행 과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경로당 신축·개축·리모델링·보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 경로당 신축·개축·리모델링·보수 지원대상

- 경로당 신축·개축·리모델링 지원조건
- 경로당 신축·개축 보조금

다.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

4.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0. ~ 6. 15.(5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6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조) 중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및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고유 기능 유지를 위하여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
6. “환경개선”이란 경로당의 미관 등을 고려 주변 시설물을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

용하여야”를 “이용해야”로,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한다.

제5조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신·개축비”를 “신축·개축·리모델링·보수비”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경로당 신축·개축·리모델링·보수 지원대상 등) ① 경로당 신축·개축·리모델링·보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 대상은 제10조에 따른 경로당 회원수가 10명 이상인 마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하나의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 경우

나. 하나의 행정리에 경로당이 있지만 기존 경로당 회원수가 80명 이상인 마을일 경우

다.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도로(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 한정한다)로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개축 대상은 기존에 등록된 경로당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경로당이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된 경우

나.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불

과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해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경우

라. 공공사업으로 기존 경로당이 수용 및 철거되는 경우

3. 리모델링 대상은 건축물 전체를 이용하고 있는 기존에 등록된 경로당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골조 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나.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경로당 회원수의 증가로 경로당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경우

4. 보수 대상은 기존에 등록된 경로당 중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소규모 사업비를 통해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경로당 신축·개축·리모델링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 조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주체가 경로당 건축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기부채납 등으로 소유권을 군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나.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대규모 사업에 포함된 경로당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여 군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주체가 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방법으로 경로당 건축 부지를 확보하여 군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라.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주체가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경로당 건축 부지로 확보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2. 개축 조건은 경로당의 부지 및 건축물 소유권이 군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해당한다.

3. 리모델링 조건은 경로당의 부지 및 건축물 소유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로당의 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가. 군수

나. 마을회 등 기타 마을 단체

다. 노인회 등 기타 노인 단체

③ 경로당 신축 및 개축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 : 300,000천원 이하

2. 연면적 80㎡ 이상인 경우 : 250,000천원 이하

3. 연면적 80㎡ 미만인 경우 : 200,000천원 이하

제7조제1항 본문 중 “제6조 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6조 중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u> <u>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u> <u>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u> <u>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u> <u>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u> <u>가복지시설을 말한다.</u> <u>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u> <u>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u> <u>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u> <u>새로 주건축물을 축조하는 것</u> <u>을 포함)을 말한다.</u> <u>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u> <u>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u> <u>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u> <u>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u> <u>하는 것을 말한다.</u> <u>4.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u> <u>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u> <u>등을 위하여 대수선 및 일부</u> <u>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u> <u>5.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u> <u>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고유</u> <u>기능 유지를 위하여 경미한</u> <u>수리행위를 말한다.</u>

제2조(적용)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노인복
지서비스 개선과 경로당 활성화
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
발·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경로당 회원은 지원된
시설 및 비품에 대해서 주인의
식을 가지고 이용하여야 하며,
담양군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
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
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6. “환경개선”이란 경로당의 미
관 등을 고려 주변 시설물을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
다.

제2조의2(적용) -----
----- 법 -----

-----.

제4조(책무 등) ① -----

---- 추진해야 -----.

② -----

----- 이용해야 -----
----- 협력해야 --
-----.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

----- 수립해야

야 한다.

제6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경로당 신·개축비

3. ~ 9. (생략)

② (생략)

<신설>

-----.

제6조(경로당 지원)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신축·개축·리모델링·보수비

3.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경로당 신축·개축·리

모델링·보수 지원대상 등) ①

경로당 신축·개축·리모델링

·보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신축 대상은 제10조에 따른

경로당 회원수가 10명 이상인

마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하나의 행정리에 경로당

이 없는 경우

나. 하나의 행정리에 경로당

이 있지만 기존 경로당 회

원수가 80명 이상인 마을

일 경우

다.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도로(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 한정한다)로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개축 대상은 기존에 등록된 경로당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경로당이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된 경우

나.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해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경우

라. 공공사업으로 기존 경로당이 수용 및 철거되는 경우

3. 리모델링 대상은 건축물 전체를 이용하고 있는 기존에 등록된 경로당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골조 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나.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경로당 회원수의 증가로 경로당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경우

4. 보수 대상은 기존에 등록된 경로당 중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소규모 사업비를 통해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경로당 신축·개축·리모델링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 조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주체가 경로당 건축 부지

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기부채납 등으로 소유권을
군수 명의로 이전하는 경
우

나.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
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대
규모 사업에 포함된 경로
당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여 군수 명의로 등
기한 경우

다.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주체가 1호가목 및 나목
외의 방법으로 경로당 건
축 부지를 확보하여 군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라.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주체가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경로당 건축
부지로 확보하여 신축하고
자 하는 경우

2. 개축 조건은 경로당의 부지
및 건축물 소유권이 군수 명
의로 등기된 경우에 해당한다.

3. 리모델링 조건은 경로당의
부지 및 건축물 소유권이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로당의 부지와 건축물의 소
유권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도 지원할 수 있다.

가. 군수

나. 마을회 등 기타 마을 단체

다. 노인회 등 기타 노인 단체

③ 경로당 신축 및 개축 지원금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100m² 이상인 경우 :

300,000천원 이하

2. 연면적 80m² 이상인 경우 : 2

50,000천원 이하

3. 연면적 80m² 미만인 경우 : 2

00,000천원 이하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차등지원)

① 군수는 제6조 제1항의 경로
당 신축 지원 및 제2항의 공유
재산의 대부 등에 대하여 행정
리에 1개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자연마을이 따로
있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략)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차등지원)

① ----- 제6조제1항-----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임원의 선출) ①·② (생략) ③ 선출된 회장에 대해서는 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제15조(경로당 운영의 공개) ① 회장은 정기회, 임시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을 <u>공개하여야</u> 한다. ② 회장은 군에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정산을 <u>하여야</u> 하며 보조금정산서, 금전출납부 등을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제16조(준용)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u>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u>」, 「<u>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u>」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보고해야</u> ----. 제15조(경로당 운영의 공개) ① - ----- ----- ----- <u>공개해야</u> ----. ② ----- ----- <u>해야</u> 하며 -- ----- ----- <u>제출해야</u> -----. 제16조(준용) ----- ----- ----- 「<u>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u>」----- ----- ----- -----.
---	---